#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인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878

발의연월일: 2020. 9. 15.

발 의 자:권인숙·송영길·유정주

장혜영 · 임오경 · 허 영

윤미향 · 김영배 · 윤후덕

진선미 • 야전비) • 이수진

이탄희 • 신동근 • 김진애

심상정 의원(16인)

#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·시행 등 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 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 보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명확하지 않고, 조직 문화 점검 및 개선권고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조직문화 컨설팅 파견 사업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.

이에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되도록 하고,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직사회의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 지 등에 이바지하려고 함.

#### 주요내용

- 가.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,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국가기관등에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(안제31조의2 신설).
- 나.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조직문화 진단 및 그 결과에 대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1조의3 신설).

###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1조의2(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)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 부장관에게 통보하고, 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건 발생을 통보받은 경우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의 점검을 위하여 해당 국가기관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31조의3(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 관등에서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 대상, 내용, 방법 및 개선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31조의2(성희롱 사건 발생 시
	조치)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
	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
	발생한 경우(국가기관등의 장
	이 해당 성희롱 사건의 행위자
	인 경우를 포함한다) 지체 없
	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
	에게 통보하고, 그 사건처리 결
	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여성가
	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	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
	따른 사건 발생을 통보받은 경
	우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
	대책의 점검을 위하여 해당 국
	가기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
	실시할 수 있으며, 점검 결과
	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
	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
	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
	<u>구할 수 있다.</u>
	③ 제1항에 따른 사건처리 결
	과와 재발방지 대책의 제출 및
	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

<신 설>

<u>필요한</u>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1조의3(조직문화 진단 및 개 선 권고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권고를 할 수 있 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 단 대상, 내용, 방법 및 개선권 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